

수원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508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21. 1.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1. 13. 접수 제90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11.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11. 23. 접수 제114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10,23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10,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2019. 8. 20. C에게 보증번호 D, 금액 2,200,000,000원, 보증기한 2029. 8. 17.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C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나. C은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황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출원리금 1,905,299,6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C은 피고 B와 ①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채무자 C,

채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980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등기는 2021.

3.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②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7.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20.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1149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21. 1. 13.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5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90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1,926,544,349원(= 대위변제금 1,905,299,677원+위약금 14,544,810원+법적절차비용 6,699,86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또는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무자력인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 내지 E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내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등을 청구한다1).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C에게 위 주장과 같은 내역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4, 18 내지 28호증, 을 제5, 16 내지 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C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변론종결일 무렵 C의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총

5,313,583,800원, 소극재산 총 5,072,454,225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241,129,575원 초과한다.

	항목	가액
적극재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606,000,000원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	0원
	화성시 F 외 4필지 지상 건물	2,910,017,000원
	화성시 F 외 4필지	1,784,670,000원
	기타 경매 제시외 건물	12,896,800원
	위 합계	5,313,583,800원
소극재산	원고 채무	2,187,183,463원
	E은행 경매청구액	929,607,614원
	G은행 근저당채무	125,975,000원
	H조합 채권신고액	48,487,248원
	H조합 근저당채무	304,559,436원
	E은행 채무	15,094,000원
	E은행 채무	100,000,000원
	주식회사 I 채무	1,000,000,000원
	피고 A 채무	102,000,000원
	피고 B 채무	210,236,000원
	동화성세무서 체납액	36,938,04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액	10,825,230원

	화성시 동부출장소 체납액	1,262,424원
	화성시 체납액	285,770원
	위 합계	5,072,454,225원

② 변론종결일 현재 C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시가는 합계 114,966,000원 상당이다.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쳤다는 이유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면서도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 가등기는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B에 대한 채무 중 담보로 제공된 만큼은 소극재산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는 더 커진다(= 256,095,575원(241,129,575원+114,966,000원)).

③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C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포함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당시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원고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사 김연하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오산시 J에 있는 K아파트 L동 [도로명 주소] 오산시 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산시 J 대 120.537.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N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01.9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20537.5분의 66.676

2. 강원 영월군 O 전 724㎡

3. 강원 영월군 P 전 774㎡

4. 강원 영월군 Q 전 2,440㎡

5. 강원 영월군 R 전 2,403㎡

6. 강원 영월군 S 전 1,193㎡

7. 강원 영월군 T 전 2,810㎡

8. 강원 영월군 U 전 2,430㎡

9. 화성시 V 대 282㎡

10. 화성시 W 대 496㎡. 끝.

1)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채권에 대한 사후담보로 사해행위인데,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B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액
210,236,000원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